

| 투자 위험 등급 | | | | | |
|----------------|----------|----------------|----------|----------|----------------|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18년 01월 02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01월 23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자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02-2168-7900, <http://www.yurieasset.co.kr>)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8.01.02)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 코드: 66231)

|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p style="color: red;">※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 | |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 투자하여 수익 추구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 | |
| 집합투자업자 | 유리자산운용(주) [☎ 02-2168-7900] | | |
| 모집(판매) 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18년 01월 23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 종류(Class) | A | A-e | C | C-e |
|-----------|---|---|-------|--------|
|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 전용 | 제한없음 | 온라인 전용 |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 | 납입금액의 0.5% | | 없음 |
| 환매수수료 | | - | | |
| 보수(연 %) | 판매 운용 등 기타 | 0.9 집합투자업자보수: 0.7, 신탁업자보수: 0.07,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 1.1 | 0.55 |
| | 0.068 | 0.067 | 0.067 | 0.067 |
| | 총보수·비용 | 1.753 | 1.302 | 1.952 |
| | 합성총보수·비용 | 1.753 | 1.302 | 1.402 |
| ※ 주석사항 | 주1)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1, 종류W, 종류I, 종류S, 종류C-P1, 종류C-G, 종류C-P1e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 | | |

| | |
|-------|---|
| | <p>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 2016.03.12~2017.03.11]</p> <p>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5)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p> <p>주6)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
| 매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매입 |
| 기준가 | <p><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공시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 (S&P/KRX Exchange Index × 90%) + (CD 91일 수익률 × 10%)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투자합니다.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 선물, 상품 등 각종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외국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전세계 주요국가의 증권(Stocks), 선물(Futures), 상품(Commodities) 및 기타 거래 대상객체 (예: 기후, Co2, 예술품 등) 등이 거래되는 각종 거래소(Exchange)와 거래소 유관기관(독립된 청산소, 대체결제소, 그리고 각종 대안거래소에 출자한 기관(IB, 은행 및 기타 회사 등))에서 발행한 상장주식에 투자 합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 자투자신탁 | | 모투자신탁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 |

4. 운용전문인력

[2018.01.02 기준, 단위: 개, 억]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 |
| 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한진규 | 1969 | 퀀트 운용 본부장 | 55 | 7,4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경영공학 학사 - KAIST 금융공학 박사 - '95.02~'99.01. 한국투자증권 - '00.02~현재. 유리자산운용 |
|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해당사항 없음 | | | |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2017.09.11 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 2016/09/12~ 2017/09/11 | 2015/09/12~ 2016/09/11 | 2014/09/12~ 2015/09/11 | 2013/09/12~ 2014/09/11 | 2012/09/12~ 2013/09/11 |
| A | 14.65 | 10.63 | 12.62 | 14.65 | 27.92 |
| 비교지수 | 18.07 | 12.17 | 2.54 | 15.95 | 25.77 |

주1) 비교지수: [(S&P/KRX Exchange Index × 90%) + (CD 91일 수익률 × 10%)]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 주요 내용 |
|---------|---|
| 원금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 환율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해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해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해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신하여 해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해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특정 업종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므로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외에 특정 업종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합니다. |
| 국가 및 지역위험 |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변수 등에 따른 위험요인에 노출됩니다. |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58%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운용역 개인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내부의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선물 또는 선도환 거래 등을 통해 외화표시자산의 순자산총액의 $60\pm10\%$ 범위에서 환해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전망, 외환시장 상황, 비용부담, 운용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예정 해지비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실제 해지비율이 예정 해지비율에 비해 불리한 사후적 성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지표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

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가입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대상펀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 세제혜택적용기간 |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C-P1e 가입자에 한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66231) | | | | | | | | | | |
|--------------------|--------------------------------|-------|-------|-------|-------|-------|-------|-------|-------|-------|-------|
| (종류) 클래스 | A | C | C1 | I | W | A-e | C-e | S | C-P1 | C-G | C-P1e |
|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 66229 | 66230 | 70448 | 66388 | 97901 | AQ489 | AQ490 | AQ485 | BB320 | BP986 | C2849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 좌

-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66231) | | | | | | | | | | |
|--------------------|--------------------------------|-------|-------|-------|-------|-------|-------|-------|-------|-------|-------|
| (종류) 클래스 | A | C | C1 | I | W | A-e | C-e | S | C-P1 | C-G | C-P1e |
|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 66229 | 66230 | 70448 | 66388 | 97901 | AQ489 | AQ490 | AQ485 | BB320 | BP986 | C2849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등록사항 |
|------------|---|
| 2007.03.12 | 최초설정 |
| 2007.06.12 | 약관변경 : Class C1 추가 |
| 2007.08.01 | 약관변경 : 일반사무보수인하 |
| 2008.08.21 | 약관변경 : 비교지수 변경 |
| 2009.05.03 | 규약변경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유리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2009.08.27 | 1. 규약변경 : 해외펀드 판매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2. 규약변경 : 이익분배 부분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 유보' 단서조항 추가 |
| 2009.09.30 | 해외펀드 판매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이익분배 부분 보완관련 규약변경 시행일 변경 (2009.08.27 → 2009.09.30) 1. 규약변경 : 해외펀드 판매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2. 규약변경 : 이익분배 부분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 유보' 단서조항 추가 |
| 2009.09.29 | 해외펀드 판매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이익분배 부분 보완관련 규약변경 취소 규약변경 : 해외펀드 판매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취소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 2010.03.16 | 1. 규약변경 : 해외펀드 판매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2. 규약변경 : 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 의한 이익분배 부분 |

| | |
|------------|---|
| | <p>'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 유보' 단서조항 추가</p> <p>3. 규약변경 : 2009년12월21일시행령 개정 이후로 발생되는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p> <p>1)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p> <p>2)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 우편으로 발송</p> |
| 2010.05.03 | 규약변경 : 판매보수인하 (Class C 수익증권) |
| 2010.07.28 | <p>규약변경</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06.13)에 따른 투자신탁 임의해지사유 변경</p> |
| 2010.08.27 | <p>운용본부 및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p> <p>(대안투자본부 : 최병로본부장 → 인덱스운용본부 : 한진규본부장)</p> |
| 2011.01.03 | <p>1. 규약변경 : Class W 수익증권 추가</p> <p>2. 비교지수 변경</p> <p>Dow Jones Global Exchanges Index 90% + CD91지수 10%</p> <p>→ [(S&P/KRX Exchange Index × 90%) + (CD 91일 수익률 × 10%)]</p> |
| 2011.08.12 | <p>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연장 반영</p> <p>：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p> |
| 2012.05.23 | <p>1. 결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p> <p>2. 기타 위험등급 분류기준 업데이트 및 투자신탁 관련 비용 내용 추가</p> |
| 2012.06.15 | 집합투자업자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수정 등 |
| 2013.08.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규약 변경) -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세제 변경 내용 반영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내용 갱신 및 기타 최근 내용 업데이트 등 |
| 2014.03.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A-e, C-e 클래스 신설 - 세법 개정사항 반영(해외펀드 손익상계 2014년말까지 연장)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 2014.06.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유승민→박상건, 2014.06.17 변경)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 2015.11.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 추가 - 세제 개편사항 반영 - 채권평가회사 추가(에프앤자산평가)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변경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 2016.02.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사항 반영 - C-W클래스 가입자격 추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1클래스 추가 -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
| 2016.04.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유리글로벌거래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2016.07.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
| 2016.07.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유보)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 2017.04.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G 클래스 신설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 2017.06.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수수료 삭제 |
| <u>2018.01.23</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규 클래스 추가(C-P1e)</u> - <u>부책임운용인력 삭제</u> - <u>모펀드 변경사항 반영</u> - <u>법 개정사항 반영</u>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보다 긴 임의의 기간을 투자기간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대표전화 : 02-2168-7900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8.01.02 기준, 단위: 개, 억)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 |
| | | | | | |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 | | | | | |
|-----------------------|---------|------|-----------------|----|-------|--|
| 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한진규 | 1969 | 퀀트 운용 본부장 | 55 | 7,470 | - KAIST 경영공학 학사 - KAIST 금융공학 박사 - '95.02~'99.01. 한국투자증권 - '00.02~현재. 유리자산운용 |
|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 해당사항 없음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퀀트운용본부(12개, 13,783억)]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구분 | 성명 | 운용기간 |
|-----------|-----|--|
| 책임운용전문인력 | 한진규 | 2010.08.18 ~ 현재 |
| | 최병로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2007.03.12) ~ 2010.08.17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박상건 | 2014.06.18 ~ 2018.01.22 |
| | 유승민 | 2013. 2. 28 ~ 2014.06.17 |
| | 이재열 | 2010. 8. 18 ~ 2010. 12. 24 |
| | 안현수 | 2010. 8. 18 ~ 2010. 12. 1 |
| | 박주호 | 2010. 8. 18 ~ 2010. 12. 24 |
| | 김용태 | 2007. 6. 28 ~ 2010. 9. 10 |
| | 강석훈 | 2007. 6. 28 ~ 2011. 4. 21 |

주) 2018.0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 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종류 | 가입자격 | 설정일 |
|-------|--|------------|
| A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는 수익증권 | 2007-03-12 |
| C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2007-03-12 |
| C1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 또는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 - |
| I | 판매사 납입금액 100억 이상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
|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 2016-03-14 |
| A-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2014-09-19 |
|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
|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2014-05-08 |
| C-P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 - |
| 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
| C-P1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종류 | 수수료 | | | 보수 (연간,%) | | | |
|-------|------------|-------------------------------|----|-----------|----------|----------|----------|
| | 선취 판매 | 후취 판매 | 환매 | 운용 보수 | 판매 보수 | 신탁 보수 | 사무 관리 |
| A | 납입금액의 1% | - | | 0.7 | 0.90 | 0.07 | 0.015 |
| C | - | - | | 0.7 | 1.10 | 0.07 | 0.015 |
| C1 | - | - | | 0.7 | 0.03 | 0.07 | 0.015 |
| I | - | - | | 0.7 | 0.25 | 0.07 | 0.015 |
| W | - | - | | 0.7 | 0.00 | 0.07 | 0.015 |
| A-e | 납입금액의 0.5% | - | | 0.7 | 0.45 | 0.07 | 0.015 |
| C-e | - | - | | 0.7 | 0.55 | 0.07 | 0.015 |
| S |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0.7 | 0.35 | 0.07 | 0.015 |
| C-P1 | - | - | | 0.7 | 0.60 | 0.07 | 0.015 |
| C-G | - | - | | 0.7 | 0.58 | 0.07 | 0.015 |
| C-P1 | - | - | | 0.7 | 0.30 | 0.07 | 0.015 |
| C-P1e | - | - | | 0.7 | 0.30 | 0.07 | 0.015 |

※ Class C 기간별 보수율

| 적용기간 | 판매회사보수율 |
|-------------------------------|---------|
| 2010년 05월 03일 ~ 2011년 05월 02일 | 연 1.7% |
| 2011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02일 | 연 1.5% |
| 2012년 05월 03일 ~ 2013년 05월 02일 | 연 1.3% |
| 2013년 05월 03일 ~ 신탁계약의 만료일 | 연 1.1% |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투자신탁 | 모투자신탁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
| 유리글로벌거래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구 분 | 세부 내용 |
|-------------|---|
| 주요 투자대상 | 해외주식 : 60% 이상, 채권 : 40% 이하 등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 선물, 상품 등 각종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외국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주요 투자위험 | 원금손실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환율위험, 집중투자위험, 국가 및 지역위험 등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 선물, 상품 등 각종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중 | 세부 내용 |
|-------------------------|------------------|---|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10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주식 : 60% 이상, 채권 : 40% 이하 등 <p>* 자세한 투자대상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

| | | |
|---|--------|---|
| 채권 | 5% 이하 | - 해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채권 |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표시자산 포함) | 10% 이하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주식 및 외국주식 | 60% 이상 | -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법 제8조의2제4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및 지분증권을 기초로 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단,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 |
| (2) 채권 및 외국채권 | 40% 이하 |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단, 제3호에 적용되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채권의 경우 2 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 (3) 어음 및 외국어음 | 40% 이하 |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
| (4) 자산유동화증권 및 외국자산 유동화증권 | 40% 이하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외국정부 또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의 성질을 구비한 것 |
| (5) 금리스왑거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 |

| | | | |
|--|---------------|--|--|
| (6) | 집합투자증권 | 5% 이하 | -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7) | 증권대여 |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
| (8)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 이하 | |
| (9) | 증권차입 |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
| (10) |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상품을 포함합니다) 및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 또는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 (11) | 고유재산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12) | 단기대출 |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
| (13) |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14) |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15) | 외화표시자산 | (12) 내지 (14)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
|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
|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
| | <p>3.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두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2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볼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③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예외 |
|----------------|--|------|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 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p> | |

| | | | |
|-----|-----------------|---|----------------|
|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u>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u>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u>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u>)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 |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 |
| (2) |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3)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
| (4) | 파생상품 투자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5) |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 |
| (6) | 후순위채권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7) | 투자한도 초과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
| (8) |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 선물, 상품 등 각종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외국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전세계 주요국가의 증권(Stocks), 선물(Futures), 상품(Commodities) 및 기타 거래대상객체 (예: 기후, Co2, 예술품 등) 등이 거래되는 각종 거래소(Exchange)와 거래소 유관기관(독립된 청산소, 대체결제소, 그리고 각종 대안거래소에 출자한 기관(IB, 은행 및 기타 회사 등))에서 발행한 상장주식에 투자합니다.

- 당사의 자체기준(정성적 평가20%) 및 정량적 평가(80%)에 의해 종목별 등급(A, B, C, D 등)을 부여하고 등급상황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등급의 부여는 계량적 요소 외에 비계량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운용자의 주관 및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투자신탁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요건, 종목간 비중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특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적 분석(80점) | | 정성적 분석(20점) | |
|--------------|----|-------------|----|
| 지표 | 점수 | 지표 | 점수 |
| P/E | 10 | 시장명성 | 5 |
| P/B | 10 | 시장 접근성 | 5 |
| EV/EBITDA(X) | 10 | 유동성 | 5 |
| FCF(%) | 10 | 향후 전망 | 5 |
| Sales(%) | 10 | | |
| EPS(%) | 10 | | |
| ROE(%) | 10 | | |
| EBITDA(%) | 10 | | |

※ 지표산출기준 : 직전 3개연도간 평균

○ 자산배분 전략

이 펀드는 운용자의 재량에 의해 주식투자비중 조절 등을 통한 자산배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전략의 의도와 달리 주가수준 등이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기타

시장상황에 따라 신탁재산의 일부를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환매대금의 예비적 확보 및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대상 국가 현황]

| 국가 | 주요지표 등 | 현황 |
|----|----------|---|
| 미국 | 경제성장률 | 2.4% (2015년), 2.4% (2014년) |
| | 1인당GDP | US\$ 54,629 (2014년)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2015년), 0.8% (2014년) |
| | 실업률 | 5.3% (2015년), 6.2% (2014년) |
| | 경제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전체 미국 경제는 개인 소비 증가와 주택 투자 호조에 힘입어 전년과 같은 수준인 2.4% 성장을 이어감. - 2015년 전체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1%의 양호한 성장을 나타냈고 민간투자는 1분기에 큰 폭 성장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4.8% 증가를 나타냈는데 주택투자가 전년대비 8.7% 증가해 가장 활발했던 반면 비주거용 구조물 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시장 개선과 견고한 소비가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주택투자 회복세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정적 요인으로는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부문 투자 부진, 달러가치 상승, 해외경제 둔화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미국 경제성장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IMF는 2.6%, OECD는 2.5%, 연방준비은행은 2.3-2.5%의 경제성장을 각각 전망 |
| 독일 | 경제성장률 | 1.7% (2015년), 1.6% (2014년) |
| | 1인당GDP | 유로 30,259 (2015년)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3% (2015년), 0.5% (2014년) |
| | 실업률 | 6.1% (2015년), 6.4% (2014년) |

| | | |
|----|----------|--|
| | 경제 현황 | - 2015년 유럽 경기 회복세와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호조세가 확대되며 확대되며 독일 정부는 2015년 4월 기준의 1.3%의 경제성장 경제성장 전망을 11.8%로 상향 조정. 그러나 상반기 그리스를 둘러싼 부채협상이 부채협상이 난항을 보이며, 경기 불안정을 가져온 탓에 독일 정부와 주요 연구소는 2015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 2015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상반기 화두였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험이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과 더불어 우선은 일단락되며,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았으나, 저유가와 중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하에 유로화 약세가 이를 상쇄하며 독일은 1.7%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
| 영국 | 경제성장률 | 0.7% (2014년), 0.8% (2013년) |
| | 1인당GDP | US\$ 46,244 (2014년)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9% (2014년), 2.5% (2013년) |
| | 실업률 | 6.0% (2014년), 6.9% (2013년) |
| | 경제 현황 | - 2015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CPI(소비자물가지수)는 -0.1%, 실업률은 5.5%를 기록하여 안정적 성장세에 접어들었으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 |

주1) 자료: KOTRA, 투자비중 상위 국가

※ 상기의 자료는 작성일(2016.07) 현재 기준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한 것이지만,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제 및 금융시장은 사회, 정치, 자연, 지리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예측되지 않는 속성을 지닙니다. 상기의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치 일 뿐 상기 자료에 기초한 투자 의사 결정의 유용성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전략]

○ 위험 관리 체계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운용업 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이익 획득 기회를 상실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환헤지 비용은 통화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연간 기준으로 1%-2% 사이인 것으로 분석 됩니다.

주1)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현실적으로 완전한 환헤지는 불가능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선물 또는 선도환 거래 등을 통해 외화표시자산의 순자산총액의 60±10% 범위에서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전망, 외환시장 상황, 비용부담, 운용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예정 해지비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실제 해지비율이 예정 해지비율에 비해 불리한 사후적 성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헤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해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신하여 해지 거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은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인 운용성과 측정을 위해 아래의 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 비교지수 : [(S&P/KRX Exchange Index × 90%) + (CD 91일 수익률 × 10%)]
 - S&P/KRX Exchange Index는 전 세계의 거래소 중 상장된 거래소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규모가 작거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거래소는 구성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비교지수산출방식 등 지수에 관한 정보는 비교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기초지수 산출기관 및 당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법령에 의한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특성과 환헤지 전략의 한계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시세의 등락 및 배당과 환율변동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평가손익 등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주식의 시세는 해당 주식 발행 기업 경영성과 및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급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경제·정치·자연·사회·문화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할수록,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클수록 주식의 시세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투자신탁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투자신탁 고유의 운용전략이 유효하게 목표를 달성하여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주식투자 성과는 투자대상국의 평균적인 주가상승률을 상회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대상국의 평균적인 주가상승률에 미달하게 됩니다. 운용자의 재량에 따라 적극적인 초과수익전략을 구사하는 특성 상 이 투자신탁의 주식투자 성과가 투자대상국의 평균적인 주가변동률에 일정한 제한 없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자본이득, 배당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으로 이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주요내용 |
|----------|---|
| 원금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주식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파생상품,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등) 등과 같이 그 가격이 주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의 시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체계적 위험 | 이 투자신탁의 고유한 운용전략 및 목표의 특성과 운용자의 재량에 의해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비교지수의 포트폴리오)와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은 시장의 평균적인 위험 외에 포트폴리오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즉 비체계적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하며 이는 시장평균(비교지수) 성과에 미달하는 성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해외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는 일반적으로 언어 및 제도의 차이, 지리적 원격성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비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
| 환율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주식 외의 해외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헤지를 실행할 경우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환손실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때에는 환헤지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이익을 상쇄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헤지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투자신탁의 성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접근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환헤지가 용이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거나 당해 통화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통화로 대신하여 헤지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의 의도되지 않은 외환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산배분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편입비중 조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편입비중 조절전략의 의도와 다르게 주식가격이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

| | |
|-----------------------------|---|
| | 투자신탁은 채무증권과 같은 주식 외의 자산에 대해서 금리민감도를 조절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바, 의도와 다르게 금리가 변화할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
|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 유동성위험 | 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
| 금리변동위험 |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매매비용 과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증권대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차입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분 | 주요내용 |
|--------|--|
| 집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특정 업종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므로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수반하는 위험 외에 특정 업종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합니다. |

| | |
|-----------|--|
| 국가 및 지역위험 |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변수 등에 따른 위험요인에 노출됩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주요내용 |
|----------|---|
| 환매가격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률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
| 환매연기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의도한 투자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해지 과정에서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관련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공정가액산정위험 |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권리행사위험 |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중지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

| | |
|----------------|---|
| |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정기예금 등 거래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 제한,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
| 대량환매위험 |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운용 교란 위험 |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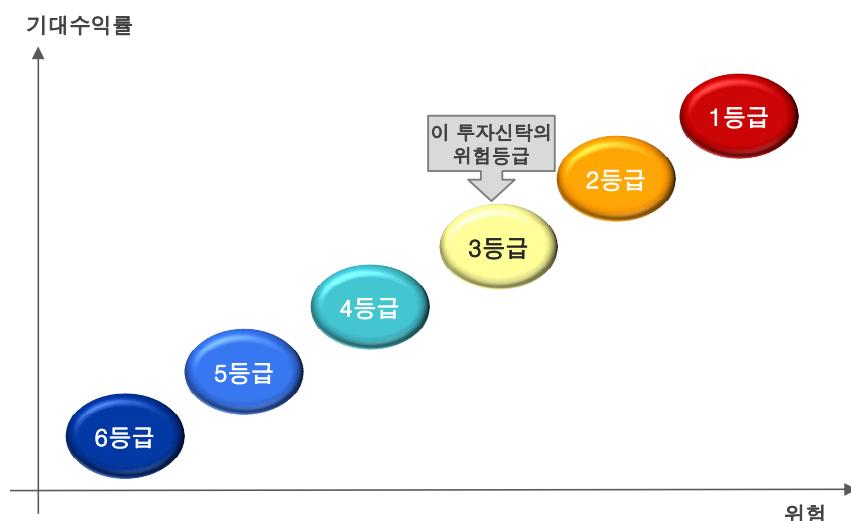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유리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58%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변경 내역

| 변경일 | 변경 전 위험등급 | 변경사유 |
|-------------------|------------|--|
| <u>2016.07.02</u> | <u>1등급</u>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고 등급분류기준이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에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 변경 |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등 위험자산에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 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2등급 (높은 위험)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4등급 (보통 위험) | 5등급 (낮은 위험) |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
| 표준편차 | 25% 초과 | 2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0.5% 이하 |

※ 변동성이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종류형은 운용펀드의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말하며 상기 위험등급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통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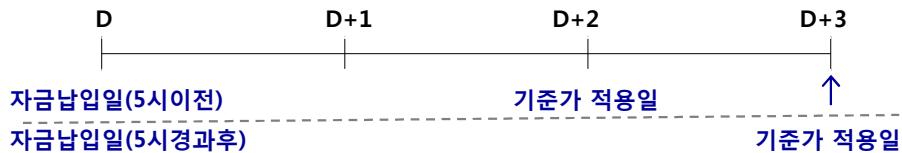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가입자격 |
|-------|--|
| A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는 수익증권 |
| C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1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 또는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
| I | 판매사 납입금액 100억 이상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
| A-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 C-P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
| 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C-P1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수익증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매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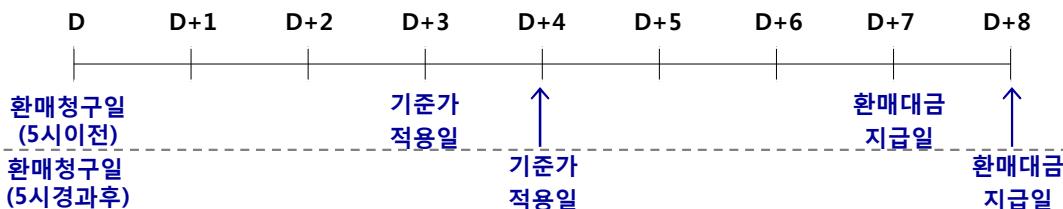
투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 ·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등으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자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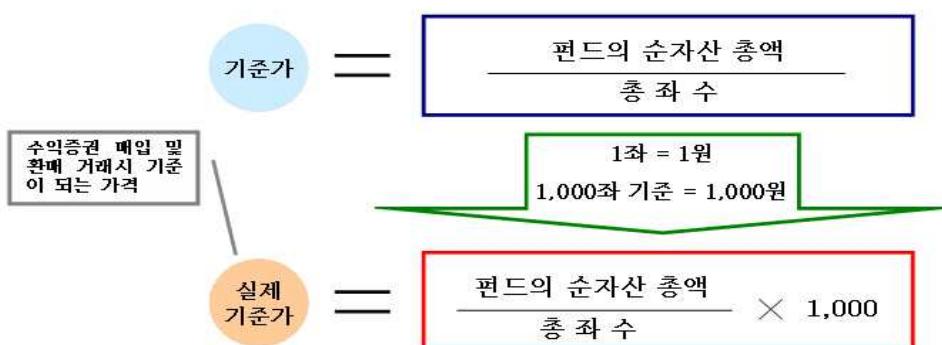
| 구 분 | 내 용 |
|-------|---|
| 기준가격의 |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

| | |
|------------------|---|
| 산정방법 |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구 분 | 평가원칙 |
|------|--|
| 시 가 |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공정가액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
|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
|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
|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
| 가. 채권평가회사 |
|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 다. 신용평가업자 |
|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혜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
| 4. 환율 |
|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
| 예상배당금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추정 예상배당금과 회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결정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시가형성 전 상장신주식 | ①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구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기준일을 영업년도말로 보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 ③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미상장주식은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④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
| 장내파생상품 |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
|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
| 상장채무증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
| 비상장채무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
| 외화표시상장주식/상 장채무증권 |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 |
|-------------|---|
|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외화표시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매각제한 투자재산 등 |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상기 대상자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표시재산 |

주1) 상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 구 분 | 주요내용 |
|------|--|
| 구 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간사 : 평가담당부서장(주무 부서장) |
| 회의소집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 기능 | 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의결방법 |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 수수료 | 전환 수수료 |
| A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는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 - | - | - |
| C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 - | - |
| C1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 또는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 - | - | - | - |
| I | 판매사 납입금액 100억 이상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 - | - | - |
|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 - | - | - | - |
| A-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 - | - | - |
|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 - | - | - |
|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
| C-P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 - | - | - | - |
| 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 - | - | - |
| C-P1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 - | - | - |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 한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며 상기의 후취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집합투자규약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 | 지급비율 (연간, %) |
|----|--------------|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 판매 회사 보수 | 신탁 업자 보수 |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 기타 비용 | 총보수 · 비용 | 합성 총 보수 · 비 용(피투자 집합투자 기구보수 포함) | 증권 거래 비용 |
|----------|----------------------|--------------------|--------------------|----------------------------|-----------|--------------------|--|----------------|
| A | 0.70 | 0.90 | 0.07 | 0.015 | 0.079 | 1.764 | 1.764 | 0.271 |
| C | 0.70 | 1.10 | 0.07 | 0.015 | 0.078 | 1.963 | 1.963 | 0.266 |
| C1 | 0.70 | 0.03 | 0.07 | 0.015 | 0.001 | 0.816 | 0.816 | 0.017 |
| I | 0.70 | 0.25 | 0.07 | 0.015 | 0.043 | 1.078 | 1.078 | 0.138 |
| W | 0.70 | 0.00 | 0.07 | 0.015 | 0.068 | 0.853 | 0.853 | 0.246 |
| A-e | 0.70 | 0.45 | 0.07 | 0.015 | 0.070 | 1.305 | 1.305 | 0.245 |
| C-e | 0.70 | 0.55 | 0.07 | 0.015 | 0.043 | 1.378 | 1.378 | 0.138 |
| S | 0.70 | 0.35 | 0.07 | 0.015 | 0.072 | 1.207 | 1.207 | 0.238 |
| C-P1 | 0.70 | 0.60 | 0.07 | 0.015 | 0.034 | 1.419 | 1.419 | 0.139 |
| C-G | 0.70 | 0.58 | 0.07 | 0.015 | 0.043 | 1.408 | 1.408 | 0.138 |
| C-P1e | 0.70 | 0.30 | 0.07 | 0.015 | 0.034 | 1.419 | 1.419 | 0.139 |
| 부과 기준 | 매3개월/ 사유발생 시 | 매3개월/ 사유발생 시 | 매3개월/ 사유발생 시 | 매3개월/ 사유발생 시 | 사유발생 시 | 매3개월/ 사유발생 시 | 매3개월/ 사유발생 시 | 사유발생 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6.03.12~2017.03.11]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6.03.12~2017.03.11]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 · 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투자신탁관련 기타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 종류 | 투자기간 | 1년 후 | 3년 후 | 5년 후 | 10년 후 |
|----|---------------------|------|------|-------|-------|
| A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76 | 556 | 975 | 2,219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76 | 556 | 975 | 2,219 |
| C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96 | 619 | 1,085 | 2,469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96 | 619 | 1,085 | 2,469 |
| C1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82 | 257 | 451 | 1,026 |

| | | | | | |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82 | 257 | 451 | 1,026 |
| I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08 | 340 | 596 | 1,356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08 | 340 | 596 | 1,356 |
| W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85 | 269 | 471 | 1,07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85 | 269 | 471 | 1,073 |
| A-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31, | 412 | 721 | 1,642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31, | 412 | 721 | 1,642 |
| C-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38 | 434 | 761 | 1,73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38 | 434 | 761 | 1,733 |
| S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21 | 380 | 667 | 1,51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21 | 380 | 667 | 1,518 |
| C-P1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42 | 447 | 784 | 1,785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42 | 447 | 784 | 1,785 |
| C-G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41 | 444 | 778 | 1,77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41 | 444 | 778 | 1,771 |
| C-P1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 112 | 350 | 614 | 1,39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 112 | 350 | 614 | 1,398 |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3) 종류별로(A와 C)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4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Class S의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고, 환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달라서 상기 수수료 및 보수·비용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lass S 수익증권의 투자가 실제 환매시점에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예시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7월 2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단계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 조세특례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조세특례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가입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대상펀드 | 조세특례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 세제혜택적용기간 |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C-P1e 가입자에 한함)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11기 반기 | - | - |
| 제10기 | - | 면제대상 |
| 제9기 | - | 면제대상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요약대차대조표 | | | |
|----------|---------------------------|-----------------------|----------------------|
| 항목 | 제11기 반기 (2017. 09. 11) | 제10기 (2017. 3. 11) | 제9기 (2016. 3. 11) |
| 운용자산 | 142,076,861,705 | 10,720,431,603 | 10,699,160,339 |
| 유가증권 | 136,531,851,256 | 10,162,708,966 | 10,295,730,378 |
| 현금 및 예치금 | 4,545,010,449 | 557,722,637 | 403,429,961 |
| 기타 운용자산 | 1,000,000,000 | 0 | 0 |
| 기타자산 | 2,831,603,972 | 94,079,917 | 284,499,236 |
| 자산총계 | 144,908,465,677 | 10,814,511,520 | 10,983,659,575 |
| 기타부채 | 3,379,338,057 | 284,182,378 | 1,497,888,031 |
| 부채총계 | 3,379,338,057 | 284,182,378 | 1,497,888,031 |
| 원본 | 115,983,295,062 | 9,696,119,564 | 9,485,771,544 |
| 이익조정금 | 25,545,832,558 | 834,209,578 | 0 |
| 자본총계 | 141,529,127,620 | 10,530,329,142 | 9,485,771,544 |

요약손익계산서

| 항목 | 제11기 반기 (2017.03.12~2017.09.11) | 제10기 (2016.03.12~2017.03.11) | 제9기 (2015.03.12~2016.03.11) |
|------------|------------------------------------|---------------------------------|--------------------------------|
| 운용수익 | 7,857,102,266 | 1,016,172,007 | 1,683,998,162 |
| 이자수익 | 9,651,133 | 4,442,452 | 3,301,121 |
| 배당수익 | 0 | 1,156,763,283 | 292,412,823 |
| 매매/평가차익(손) | 7,845,193,217 | -148,278,021 | 1,356,488,440 |
| 기타수익 | 2,257,916 | 3,244,293 | 31,795,778 |
| 운용비용 | 629,613 | 56,240 | 8,291,148 |
| 매매수수료 | 148,322 | 0 | 0 |

| | | | |
|-------|---------------|---------------|---------------|
| 기타비용 | 481,291 | 56,240 | 8,291,148 |
| 당기순이익 | 7,856,472,653 | 1,016,115,767 | 1,675,707,014 |
| 매매회전율 | 0 | 0 | 93 |

-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상기의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 | | |
|-----------|-------------------------|----------------------|---------------------|
| 항목 | 제11기 반기 (2017.09.11) | 제10기 (2017.03.11) | 제9기 (2016.03.11) |
| 운용자산 | 142,076,861,705 | 10,720,431,603 | 10,699,160,339 |
| 현금및예치금 | 4,545,010,449 | 557,722,637 | 403,429,96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83,723,042 | 271,001,168 | 174,859,612 |
| 증거금 | 4,161,287,407 | 286,721,469 | 228,570,349 |
| 대출채권 | 1,000,000,000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00,000,000 | | |
| 유가증권 | 136,531,851,256 | 10,162,708,966 | 10,295,730,378 |
| 지분증권 | 6,907,357,925 | 0 | 0 |
| 수익증권 | 129,624,493,331 | 10,162,708,966 | 10,295,730,378 |
| 기타자산 | 2,831,603,972 | 94,079,917 | 284,499,236 |
|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2,799,877,880 | 62,548,416 | 163,625,873 |
| 정산미수금 | 0 | 0 | 42,275,000 |
| 미수이자 | 254,418 | 59,827 | 37,638 |
| 선납세 | 31,471,674 | 31,471,674 | 64,705,611 |
| 기타미수입금 | 0 | 0 | 13,855,114 |
| 자산총계 | 144,908,465,677 | 10,814,511,520 | 10,983,659,575 |
| 기타부채 | 3,379,338,057 | 284,182,378 | 1,497,888,031 |
| 정산미지급금 | 263,250,000 | 2,400,000 | 0 |
| 해지미지급금 | 3,115,592,008 | 69,712,275 | 182,496,662 |
| 수수료미지급금 | 496,049 | 1,360 | 6,960 |
| 미지급이익분배금 | 0 | 212,068,743 | 1,315,384,409 |

| | | | |
|------------|-----------------|----------------|----------------|
| 부 채 총 계 | 3,379,338,057 | 284,182,378 | 1,497,888,031 |
| 원 본 | 115,983,295,062 | 9,696,119,564 | 9,485,771,544 |
| 이익잉여금 | 25,545,832,558 | 834,209,578 | 0 |
| 자 본 총 계 | 141,529,127,620 | 10,530,329,142 | 9,485,771,544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44,908,465,677 | 10,814,511,520 | 10,983,659,575 |
| 총좌수 | 115,983,295,062 | 9,696,119,564 | 9,485,771,544 |
| 기준가격 | 1.220.25 | 1,086.04 | 1,000 |

다.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 | |
|-----------------|------------------------------------|---------------------------------|--------------------------------|
| 항목 | 제11기 반기 (2017.03.12~2017.09.11) | 제10기 (2016.03.12~2017.03.11) | 제9기 (2015.03.12~2016.03.11) |
|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 | 7,857,102,266 | 1,016,172,007 | 1,683,998,162 |
| 투자수익 | 11,909,049 | 1,164,164,835 | 296,038,048 |
| 이자수익 | 9,651,133 | 4,442,452 | 3,301,121 |
| 배당금수익 | 0 | 1,156,763,283 | 292,412,823 |
| 수수료수익 | 2,257,916 | 2,959,100 | 324,104 |
|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16,455,398,090 | 3,921,614,410 | 5,549,101,406 |
| 지분증권매매차익 | 1,092,679,165 | 171,245,524 | 849,475,316 |
| 파생상품매매차익 | 8,455,361,000 | 3,666,524,000 | 3,443,469,000 |
| 외환거래매매차익 | 0 | 83,844,886 | 769,760,834 |
| 지분증권평가차익 | 6,907,357,925 | 0 | 472,541,142 |
| 외환거래평가차익 | 0 | 0 | 13,855,114 |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8,610,204,873 | 4,069,892,431 | 4,192,612,966 |
| 지분증권매매차손 | 842,873 | 62,451,526 | 93,941,556 |
| 파생상품매매차손 | 8,609,362,000 | 3,410,256,000 | 3,704,418,000 |
| 외환거래매매차손 | 0 | 37,600,000 | 394,253,410 |
| 지분증권평가차손 | 0 | 559,584,905 | 0 |
| 기타운용수익 | 0 | 285,193 | 31,471,674 |
| 운 용 비 용 | 629,613 | 56,240 | 8,291,148 |
| 매매수수료 | 148,322 | 0 | 0 |
| 기타운용비용 | 481,291 | 56,240 | 8,291,148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7,856,472,653 | 1,016,115,767 | 1,675,707,014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123.31 | 105.51 | 154.70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7.09.11 기준, 단위:백만좌, 백만원)

| 구분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
| 투자 신탁 (전체) | 2015/03/12~2016/03/11 | 13,088 | 13,088 | 4,108 | 4,180 | 7,710 | 8,240 | 9,486 | 10,801 |
| | 2016/03/12~2017/03/11 | 9,486 | 10,801 | 7,749 | 8,082 | 7,539 | 7,841 | 9,696 | 10,742 |
| | 2017/03/12~2017/09/11 | 9,696 | 10,530 | 131,989 | 153,886 | 25,702 | 30,743 | 115,983 | 141,529 |
| A | 2015/03/12~2016/03/11 | 10,730 | 10,730 | 472 | 512 | 4,876 | 5,284 | 7,537 | 8,440 |
| | 2016/03/12~2017/03/11 | 7,537 | 7,537 | 1,149 | 1,180 | 4,160 | 4,313 | 5,304 | 5,780 |
| | 2017/03/12~2017/09/11 | 5,304 | 5,758 | 693 | 805 | 684 | 785 | 5,330 | 6,448 |
| C | 2015/03/12~2016/03/11 | 2,506 | 2,506 | 107 | 115 | 976 | 1,052 | 1,921 | 2,147 |
| | 2016/03/12~2017/03/11 | 1,921 | 1,921 | 739 | 770 | 1,255 | 1,312 | 1,610 | 1,751 |
| | 2017/03/12~2017/09/11 | 1,610 | 1,747 | 416 | 486 | 588 | 673 | 1,440 | 1,740 |
| C1 | 2017/03/12~2017/09/11 | 1,452 | 1,442 | 137,899 | 146,637 | 25,651 | 28,057 | 113,700 | 126,360 |
| A-e | 2015/03/12~2016/03/11 | 16 | 16 | 51 | 55 | 37 | 41 | 32 | 36 |
| | 2016/03/12~2017/03/11 | 32 | 32 | 158 | 162 | 160 | 165 | 33 | 36 |
| | 2017/03/12~2017/09/11 | 33 | 36 | 1,057 | 1,248 | 66 | 79 | 1,024 | 1,242 |
| S | 2015/03/12~2016/03/11 | 2 | 2 | 146 | 160 | 29 | 31 | 120 | 136 |
| | 2016/03/12~2017/03/11 | 120 | 120 | 1,910 | 1,995 | 613 | 642 | 1,432 | 1,569 |
| | 2017/03/12~2017/09/11 | 1,432 | 1,555 | 2,839 | 3,326 | 724 | 842 | 3,559 | 4,318 |
| C-P1 | 2016/10/27~2017/03/11 | 0 | 0 | 56 | 59 | 0 | 0 | 56 | 59 |
| | 2017/03/12~2017/09/11 | 56 | 58 | 342 | 386 | 58 | 64 | 341 | 398 |
| Ce | 2016/06/22~2017/03/11 | 0 | 0 | 125 | 134 | 71 | 75 | 55 | 60 |
| | 2017/03/12~2017/09/11 | 55 | 60 | 202 | 236 | 33 | 38 | 225 | 272 |
| CW | 2016/03/14~2017/03/11 | 0 | 0 | 20 | 20 | 10 | 10 | 10 | 11 |
| | 2017/03/12~2017/09/11 | 10 | 11 | 426 | 513 | 18 | 21 | 418 | 508 |
| C-C1 | 2016/04/18~2017/04/17 | 0 | 0 | 127 | 126 | 0 | 0 | 127 | 127 |
| | 2016/04/18~2017/04/17 | 0 | 0 | 1 | 1 | 1 | 1 | 2 | 2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017.09.11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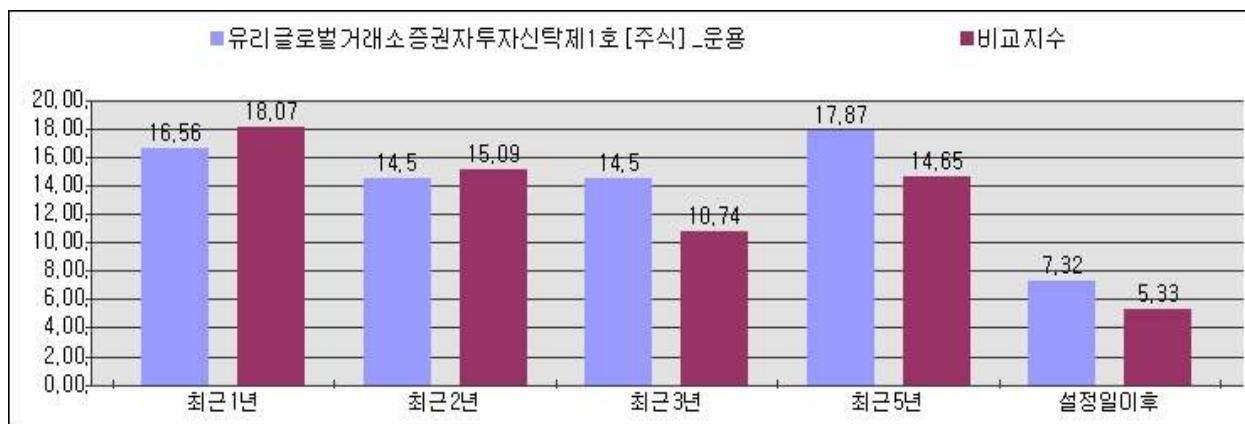
| 기간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3년 | 최근5년 | 설정일이후 |
|------|---------------------------|---------------------------|---------------------------|---------------------------|-------------|
| | 2016/09/12~ 2017/09/11 | 2015/09/12~ 2017/09/11 | 2014/09/12~ 2017/09/11 | 2012/09/12~ 2017/09/11 | 2007/03/12~ |
| 투자신탁 | 16.56 | 14.5 | 14.5 | 17.87 | 7.32 |
| 비교지수 | 18.07 | 15.09 | 10.74 | 14.65 | 5.33 |
| A | 14.65 | 12.62 | 12.62 | 15.94 | 5.53 |
| 비교지수 | 18.07 | 15.09 | 10.74 | 14.65 | 5.33 |
| C | 14.43 | 12.4 | 12.4 | 15.69 | 4.94 |
| 비교지수 | 18.07 | 15.09 | 10.74 | 14.65 | 5.33 |
| C1 | 0 | 0 | 0 | 0 | 1.04 |
| 비교지수 | 0 | 0 | 0 | 0 | 1.37 |
| S | 15.27 | 13.23 | 13.23 | 0 | 14.49 |
| 비교지수 | 18.07 | 15.09 | 10.74 | 0 | 11.63 |
| A-e | 15.16 | 13.12 | 13.21 | 0 | 13.93 |
| 비교지수 | 18.07 | 15.09 | 10.74 | 0 | 11.05 |
| C-e | 15.04 | - | - | - | 17.85 |
| 비교지수 | 18.07 | - | - | - | 21.92 |
| W | 15.67 | - | - | - | 14.85 |
| 비교지수 | 18.07 | - | - | - | 18.48 |
| C-P1 | - | - | - | - | 21.42 |
| 비교지수 | - | - | - | - | 25.77 |

주1) 비교지수 : [(S&P/KRX Exchange Index × 90%) + (CD 91일 수익률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2017.09.11 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4년 | 최근 5년 |
|------|---------------------------|---------------------------|---------------------------|---------------------------|---------------------------|
| | 2016/09/12~ 2017/09/11 | 2015/09/12~ 2016/09/11 | 2014/09/12~ 2015/09/11 | 2013/09/12~ 2014/09/11 | 2012/09/12~ 2013/09/11 |
| 투자신탁 | 16.56 | 12.47 | 14.52 | 16.56 | 30.02 |
| 비교지수 | 18.07 | 12.17 | 2.54 | 15.95 | 25.77 |
| A | 14.65 | 10.63 | 12.62 | 14.65 | 27.92 |
| 비교지수 | 18.07 | 12.17 | 2.54 | 15.95 | 25.77 |
| C | 14.43 | 10.41 | 12.4 | 14.43 | 27.51 |
| 비교지수 | 18.07 | 12.17 | 2.54 | 15.95 | 25.77 |
| C-C1 | 0 | 0 | 0 | 0 | 0 |
| 비교지수 | 0 | 0 | 0 | 0 | 0 |
| S | 15.27 | 11.23 | 13.23 | 0 | 0 |
| 비교지수 | 18.07 | 12.17 | 2.54 | 0 | 0 |
| A-e | 15.16 | 11.12 | 13.37 | 0 | 0 |
| 비교지수 | 18.07 | 12.17 | 2.54 | 0 | 0 |
| C-e | 15.04 | 0 | 0 | 0 | 0 |
| 비교지수 | 18.07 | 0 | 0 | 0 | 0 |
| W | 15.67 | 0 | 0 | 0 | 0 |
| 비교지수 | 18.07 | 0 | 0 | 0 | 0 |
| C-P1 | 0 | 0 | 0 | 0 | 0 |
| 비교지수 | 0 | 0 | 0 | 0 | 0 |

주1) 비교지수 : [(S&P/KRX Exchange Index × 90%) + (CD 91일 수익률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7.09.11 기준, 단위: 백만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 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부동산 | 실물 자산 | 기타 | | | |
| 대한민국 | 0 | 0 | 0 | 136,532 | 4,161 | 0 | 0 | 0 | 0 | 384 | 3,831 | 144,908 |
| 비중 | (0) | (0) | (0) | (94.22) | (2.87) | (0) | (0) | (0) | (0) | (0.26) | (2.64) | (100) |
| 자산합계 | 0 | 0 | 0 | 136,532 | 4,161 | 0 | 0 | 0 | 0 | 384 | 3,831 | 144,908 |
| 비중 | (0) | (0) | (0) | (94.22) | (2.87) | (0) | (0) | (0) | (0) | (0.26) | (2.64) | (100) |

주1)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자산비중]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7.09.11 기준,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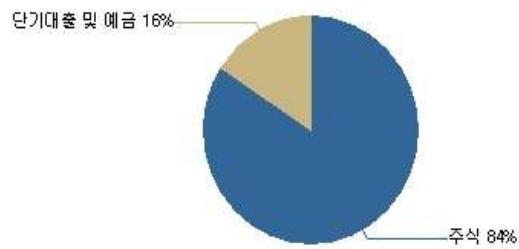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 산 | 특별자산 | | 단기대 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 액 |
|-----------|---------|-----|--------|------------|------|-----|---------|----------|--------|------------------|-----|----------|
| | 주식 | 채권 | 어 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 산 | 기 타 | | | |
| 미국 | 53,802 | 0 | 0 | 0 | 0 | 0 | 0 | 0 | 0 | 10,106 | 0 | 63,908 |
| | (84.19) | (0) | (0) | (0) | (0) | (0) | (0) | (0) | (0) | (15.81) | (0) | (45.59) |
| 유럽연합 | 21,972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21,972 |
| | (1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67) |
| 영국 | 13,12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129 |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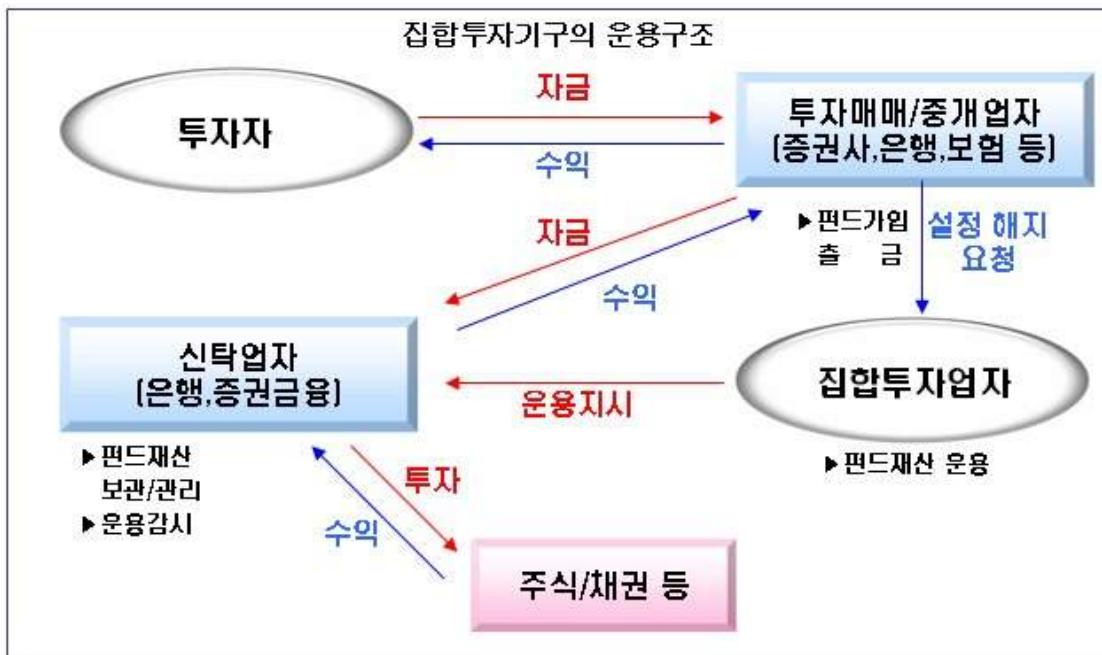
| | | | | | | | | | | | | |
|----------|---------|-----|-----|-----|-----|-----|-----|-----|---------|--------|---------|--------|
| | (1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37) |
| 홍콩 | 11,99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990 |
| | (1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55) |
| 브라질 | 11,408 | 0 | 0 | 0 | 0 | 0 | 0 | 0 | 16 | 0 | 0 | 11,425 |
| | (99.86) | (0) | (0) | (0) | (0) | (0) | (0) | (0) | (0.14) | (0) | (0) | (8.15) |
| 일본 | 5,74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743 |
| | (1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1) |
| 대한민국 | 0 | 0 | 0 | 0 | 0 | 0 | 0 | 0 | 2,579 | 934 | 3,514 | |
| | (0) | (0) | (0) | (0) | (0) | (0) | (0) | (0) | (73.4) | (26.6) | (2.51) | |
| 싱가포르 | 2,7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700 |
| | (1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93) |
| 멕시코 | 801 | 0 | 0 | 0 | 0 | 0 | 0 | 0 | 1,050 | 0 | 0 | 1,851 |
| | (43.28) | (0) | (0) | (0) | (0) | (0) | (0) | (0) | (56.72) | (0) | (0) | (1.32) |
| 말레이시아 | 850 | 0 | 0 | 0 | 0 | 0 | 0 | 0 | 534 | 0 | 0 | 1,384 |
| | (61.43) | (0) | (0) | (0) | (0) | (0) | (0) | (0) | (38.57) | (0) | (0) | (0.99) |
| 호주 | 95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951 |
| | (99.9) | (0) | (0) | (0) | (0) | (0) | (0) | (0) | (0.1) | (0) | (0) | (0.68) |
| 남아프리카공화국 | 69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93 |
| | (99.94) | (0) | (0) | (0) | (0) | (0) | (0) | (0) | (0.06) | (0) | (0) | (0.49) |
| 캐나다 | 680 | 0 | 0 | 0 | 0 | 0 | 0 | 0 | 0 | 5 | 0 | 685 |
| | (99.31) | (0) | (0) | (0) | (0) | (0) | (0) | (0) | (0.69) | (0) | (0) | (0.49) |
| 아랍에미레이트 | 22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9 |
| | (1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16) |
| 뉴질랜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0) | (0) | (0) |
| 스웨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0) | (0) | (0) |
| 자산합계 | 124,948 | 0 | 0 | 0 | 0 | 0 | 0 | 0 | 14,292 | 934 | 140,175 | |
| | (89.14) | (0) | (0) | (0) | (0) | (0) | (0) | (0) | (10.2) | (0.67) | (0) | (100) |

주)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자산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7 (여의도동) ☎ 02-2168-7900 |
| 인터넷홈페이지 | www.yurieasset.co.kr |
| 회사연혁 | 1998.10 회사설립 1999.08 자산운용회사 등록 1999.10 뮤추얼 펀드 판매 게시 2000.03 투자자문업등록 2000.05 투자일임업등록 |
| 자본금 | 153억 |
| 주요주주현황 | 부국증권(주) 99.05% / 우리사주조합 0.92% / 기타 0.03% |
| 이해관계인 |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 요약대차대조표 |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구분 | 제 19 기 | 제 18 기 | 구분 | 제 19 기 | 제 18 기 |
| | ('16.12.31) | ('15.12.31) | | ('16.1.1~'16.12.31) | ('15.1.1~'15.12.31) |
| 자산총계 | 32,334 | 30,804 | 영업수익 | 11,555 | 9,488 |
| - 현금및예치금 | 25,664 | 25,356 | - 운용보수 | 5,737 | 4,274 |
| - 유가증권 | 532 | 532 | - 자산관리수수료 | 5,069 | 4,242 |
| - 대출채권 | 187 | 88 | - 이자수익 | 395 | 476 |
| - 유형자산 | 123 | 191 | - 당기순익인식증권처분이익 | 354 | 496 |
| - 무형자산 | 3,596 | 2,645 | - 당기순익인식증권평가이익 | - | - |
| - 기타자산 | 2,233 | 1,993 | 영업비용 | 8,337 | 7,309 |
| 부채총계 | 1,185 | 2,103 | - 당기순익인식증권처분손실 | 11 | 61 |
| - 예수부채 | - | - | - 수수료비용 | 271 | 185 |
| - 차입부채 | - | - | - 판매비와관리비 | 8,055 | 7,063 |
| - 기타부채 | 1,185 | 2,103 | 영업이익(손실) | 3,219 | 2,179 |
| 자본총계 | 31,149 | 28,701 | 영업외수익 | 12 | 41 |
| - 자본금 | 15,300 | 15,300 | 영업외비용 | 21 | 30 |
| - 자본잉여금 | 198 | 19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210 | 2,189 |
| - 이익잉여금 | 15,651 | 13,204 | 법인세비용 | 762 | 537 |
| 부채와자본총계 | 32,334 | 30,804 | 당기순이익(손실) | 2,448 | 1,652 |

라. 운용자산규모

(2018.01.02 기준, 단위:억)

| 구분 | 증권 | | | | 파생형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MMF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재간접 | | | | | |
| 수탁고 | 4,300 | 1,936 | 21,566 | - | 5,593 | 6 | 587 | - | 33,988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연락처 : 1588-5753 |
| 인터넷홈페이지 | www.citibank.co.kr |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하나펀드서비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 02-6714-4642 |
| 인터넷홈페이지 | 없음 |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KIS채권평가(주) | NICE피앤아이(주) | 에프앤자산평가(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8 (여의도동) ☎ 02)3770-04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 02)739-3590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 02)721-5300 |
| 홈페이지 | www.koreabp.com | www.bond.co.kr | www.nicepni.com | www.fnpricing.com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입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 우편으로 발송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②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1항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 · 위탁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선정시 고려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 (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단, 유동성이 없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위의 상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가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중개사의 평가

- 각 운용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합니다.
 1. 매매체결능력
 2. 중개수수료
 3. 정보제공의 정도
 4. 조사분석자료의 질
 5. 결제이행능력
- 각 운용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중개사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약정배분기준

-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합니다.
 2. 약정 집행은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5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5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 합니다.
 2. 약정집행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3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운용부서는 매 분기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중개회사별 매매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 종류형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판매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판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금융 |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